

·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환경친화적바다목장화실현추진 사업외 172 건인

234,481,445,566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84 건) 157,971,804,870 원
- 사고이월 (89 건) 76,509,640,696 원
- 계속비이월 (0 건) 0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